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9. 9 선고 2019가합1214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2. 6. 29 선고 2021나2407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9. 9 선고 2019가합12146 판결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드보라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훈모, 백승찬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73,620,495원 및 그 중 283,372,109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3,370,841,549원에 대하여는 2019. 5. 27.부터 각 2019. 10.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서귀포시 C 답 564㎡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이 2018. 7. 3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 9. 28. 접수 제54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시한 후 대출을 받았다.

순번	약정 체결일	보증번호	대출은행	보증기한 (연장)	보증원금 (변경)
보증1	2015. 6. 24.	F	E은행	2016. 6. 23. (2019. 6. 21.)	2,400,000,000원 (3,120,000,000원)
보증2	2015. 6. 24.	G	E은행	2016. 6. 23. (2019. 6. 21.)	120,000,000원
보증3	2015. 10. 15.	H	E은행	2025. 10. 14.	592,200,000원

보증4	2016. 8. 29.	I	한국산업은행	2017. 8. 29. (2019. 2. 28.)	280,000,000원
보증5	2017. 8. 8.	J	E은행	2018. 8. 8. (2019. 8. 8.)	560,000,000원
보증6	2017. 9. 21.	K	E은행	2018. 9. 21. (2019. 3. 21.)	616,000,000원
보증7	2018. 3. 7.	L	E은행	2019. 3. 7.	248,000,000원
보증8	2018. 4. 3.	M	E은행	2019. 4. 3.	230,400,000원
보증9	2018. 5. 9.	N	E은행	2019. 5. 9.	116,000,000원
보증10	2018. 8. 31.	O	E은행	2019. 2. 28.	240,000,000원
보증11	2018. 8. 31.	P	E은행	2019. 2. 28.	200,000,000원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D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은 2018. 7. 31. 피고 B과 자신의 소유인 서귀포시 C 답 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9. 28.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전남 보성군 Q 임야 750㎡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액은 합계 약 37,814,200원이고, 소극재산으로 원고 및 신용보증기금에 합계 약 5,046,265,63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바. D은 E은행에 대하여 2019. 3. 26.자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19. 3. 27.자로 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중단에 따른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2019. 4. 26. 한국산업은행에 288,838,179원을, 2019. 5. 27. E은행에 3,370,841,54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5,559,944원을 회수함으로써, D 및 피고 A에 대하여 총 3,673,620,495원(= 원고의 E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3,654,213,658원 + 확정된 지연손해금 47,921원 + 추가보증료 8,810,870원 + 법적 절차비용 10,548,046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6 내지 1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3,673,620,495원 및 그 중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83,372,109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4. 26.부터,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위변제금 3,370,841,549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5.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10. 11.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76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로 2019. 4. 26., 같은 해 5. 27. 피고 A에 대해 총 3,673,620,495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8. 7. 31.경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순번 보증10, 11 제외)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갑 제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주채무자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인 2018. 10. 2.경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자 미지급에 따른 신용보증사고(1차)를 발생시켰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8. 4. 20.경부터 금융기관에 의하여 D에 대한 제1차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D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원재료 조달 난항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도 지속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8. 9. 28.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D은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8. 10. 1.경 주채권은행인 E은행에 스스로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을 하였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 A이 D의 사내이사였던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따라서 위 피고는 D의 신용 내지 재무상태를 상당히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은, 2017. 12. 6.경 피고 A이 1인 주주로 있는 R 주식회사에 2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위 대여금 채무를 피고 A이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가 늦어져 피고 A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다만 그 형식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